



# 의류 및 세탁

##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알아두면 유리합니다

다음과 같은 의류의 구매 및 세탁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: **직업 상 요구되는 의복, 보호복, 고유성과 특이성을 반영한 유니폼.**

✓ 직업 상 요구되는 의복에 대해서는 **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것으로서, 본질적으로 일상복이 아니며 사람들이 복장으로 직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
예를 들면, 요리사들이 착용하는 체크 무늬 바지가 이에 해당합니다.

✓ 소득 활동 수행 시, 질환이나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착용하는 **보호복과 신발**에 대해서는 **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 이러한 의류는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

다음과 같은 예들이 포함됩니다:

- 방화복 및 헛별 차단복
- 형광 안전 조끼
- 간호사 용 미끄럼 방지 신발
- 스틸-캡드 부츠(안전화)
- 얼룩이나 손상으로부터 평상복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방수 각반과 작업복, 앞치마.

✓ 근무하는 직장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나타내는 **의무 착용 또는 비 의무 착용 유니폼**에 대해서는 **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

의복의 경우:

- **고유성:** 해당 고용주만을 위해 디자인되고 제작된 경우
- **특이성:** 해당 고용주의 로고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경우.

✗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, 또는 양복과 같이 근무를 위해 구매하였으나 해당 직종에 한정되는 의복이 아닌 경우,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, 해당 의복의 구매나 세탁비에 대해 **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**

이러한 의복은 보통 특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통상적인 것으로, 고용주의 고유성이나 특이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✗ 평상복(예를 들어, 청바지와 드릴 셔츠, 반바지, 긴 바지, 양말, 구두나 운동화 등)은 업무 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**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**



**의무 착용 유니폼**은 특정 조직이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근무 시 엄격한 의무 착용 규정을 적용하여 의복으로써 조직의 피고용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복장을 말합니다.

✓ 신발과 양말, 스타킹이 특이성을 가진 의무 착용 유니폼의 핵심 부분이며, 그 특성(색상, 스타일, 유형)이 고용주의 유니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, 해당 물품들에 대해 **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

✓ 근무 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퍼 등의 단일 품목 의류에 대해 **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



**비 의무 착용 유니폼**은 다음과 같은 의류 및 부속물(보호 기능이나 직업 특수성 결여)을 말합니다:

- 특정 고용주나 제품, 서비스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
- 피고용인들이 근무복으로 착용할 의무는 없다.

✓ **비 의무 착용 유니폼**과 관련해서 발생한 경비는 고용주가 디자인을 AusIndustry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, **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

✗ 신발과 양말, 스타킹은 **비 의무 착용 유니폼**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.

✗ 점퍼와 같은 단일 품목 **비 의무 착용 유니폼**에 대해서는 **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**

상황	공제 대상 의류	공제 대상 세탁비	사유
고용주가 평범한 검정색 바지와 검정색 폴로 셔츠를 입도록 요구한다	❌	❌	고용주의 특이성이 반영되지 않은 통상복
고용주가 평범한 검정색 바지를 입도록 요구하고, 고용주의 고유성과 특이성이 반영된 로고가 부착된 상의를 공급한다	❌	✅ 상의	<b>상의</b> 근무하는 직장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반영하는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 <b>바지</b> 검정색 바지는 본질적으로 일상복이며 고용주의 특이성이나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-색상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
고용주가 로고가 부착된 특정 상의와 평범한 검정색 바지를 구매하여 착용하도록 요구한다	✅ 상의 ❌ 바지	✅ 상의 ❌ 바지	<b>상의</b> 근무하는 직장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반영하는 상의를 구매해야 한다  <b>바지</b> 검정색 바지는 본질적으로 일상복이며 고용주의 특이성이나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-색상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
고용주가 로고가 부착된 특정 상의와 XYZ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검정색 바지를 구매하여 착용하도록 요구한다	✅ 상의 ❌ 바지	✅ 상의 ❌ 바지	<b>상의</b> 근무하는 직장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반영하는 로고가 부착된 상의를 구매해야 한다  <b>바지</b> 로고나 다른 특이성이 없는 검정색 바지는 고용주가 구매하도록 요구하더라도 근무하는 직장의 고유성이나 특이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
고용주가 등록된 특정 스타일과 색상의 유니폼을 구매하도록 요구한다. 해당 유니폼은 로고가 부착된 셔츠와 검정색 바지로 구성된다	✅	✅	고용주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정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
본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최신 의상을 구매하여 착용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한다	❌	❌	근무지에서 착용하는 평상복 비용에 대해서는, 고용주가 착용을 요구하고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, 공제 청구를 할 수 없다

## 기록

다음의 경우, 세탁 경비 일지(최소 한 달 기간의 예시 기록)와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:

- 공제 청구 금액이 150달러 이상인 경우
- 업무 관련 경비 공제 청구 총액이 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.

세탁 경비에 대해 서면 증빙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,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제 청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세척과 건조, 다림질을 할 경우, 합리적인 세탁(세척, 건조, 다림질)비용 공제 청구액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업무 관련 의복만을 세탁할 때 1회당 1달러
- 세탁물에 다른 의류가 포함될 때 1회당 50센트

## 수당

고용주로부터 세탁 경비 수당을 받을 경우:

- 단순히 수당 금액이 아니라,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수당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, 세금신고 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